

2024년 별정직 채용 공고문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별정직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 중심채용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하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 표준(www.ncs.go.kr 참조)



I 모집개요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분야	직급	주요직무	모집단위	인원(명)
별정직	4급을대우	디지털정보	① SAP컨설턴트-재무회계	1
	4급병대우	LNG도입(수송)	② 선박관리자	1
	5급대우	안전보건	③ 심리상담사	1
	6급대우	안전보건	④ 보건관리자	5
	6급대우	생산기지운영	⑤ 하역안전관리자	1
	7급대우	경영협력	⑥ 영상촬영기사	1
계				10

*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된 NCS직무설명서 참조 / ** 근무지 : 공고문 7페이지 참조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연 령	▶ 제한 없음(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
병 역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
학력/전공	▶ 모집단위별 지원자격 확인
결격사항	▶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첨부#1)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 타	▶ 2024.08.26.(월)부터 연수원 입소 가능한 자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일 등) 또는 여학정보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 ▶ 자격, 경력,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일 : 접수마감일(2024.05.28.) (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 1년은 365일로 산정) ▶ 해외 학위, 자격증 및 근무기간 증빙의 경우, 해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근무 국가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학위/자격/경력증명서 제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후 제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입사지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4.06.12.(수) 14:00까지 공사메일(recruit@kogas.or.kr)로 별도 제출가능 ▶ 경력증명서는 '24.1.1.이후 발급분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마감일 2개월 이전인 '24.03.28.이후 발급분 제출

□ 모집단위별 지원자격

① SAP컨설턴트-재무회계(FI)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SAP FI(재무회계, Finance) Certificate 또는 SAP CO(관리회계, Controlling) Certificate 보유자 - 보유 후 해당분야의 개발 또는 운영업무 근무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 * FI, CO분야 합산 7년 이상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¹⁾ 및 자격 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3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학력	▶ 전공무관 학사학위 이상
주요직무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SAP 회계분야 핵심모듈(FI, CO)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추진 - SAP ERP 컨버전(ECC6.0 → S/4 HANA)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프로세스 디지털화

② 선박관리자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LNG선의 운항감독 또는 공무감독 업무를 1년 이상 경력자 -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2급 이상 유효면허 소지자 -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LNG운반선에서 3년 이상 동안 승선한 경력자 - 토익 750점 이상 수준의 유효 영어성적 보유자(첨부#4)
경력인정 필수요건	▶ 승선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상 「총톤수」, 「해기면종」 및 「승선기간」으로 경력기간 산정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¹⁾ 및 자격 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3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LNG선 운영비용 분석 및 합리화 추진 ▶ 유류 국적선 개조 등 신규 활용방안 검토 ▶ 선박 관련 국제 환경규제 대응 ▶ 선박 기술 관련 분쟁 송무 지원 및 해수부 등 관련 기관 업무협의

1) 경력증명서(2024.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4.3.28.이후 발급분)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③ 심리상담사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다음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한 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 기업심리상담(EAP) 운영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¹⁾ 및 자격 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3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학력	▶ 상담심리학, 심리학, 상담학 등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주요직무	▶ 전사 정신건강 증진체계 구축 ▶ 심리검사 진행 및 직원 대상 개인상담, 가족/부서단위 상담 ▶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 운영 등

④ 보건관리자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로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인정 필수요건	▶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직인필수)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인이 발급받은 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를 필수제출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¹⁾ 및 자격 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3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보건관리 법정 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 ▶ 「의료법」에 정한 간호사의 일반 업무(「의료법」 제2조) ▶ 해당 사업소 보건업무 지도,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 등

1) 경력증명서(2024.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4.3.28.이후 발급분)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5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3급 이상 유효면허 소지자 - 총톤수 3천톤 이상의 LNG운반선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승선한 경력자 ·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3년 이상 ·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2년 이상 ·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 1년 이상 * 수 종의 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고등급 면허기준 승선년수 이상
경력인정 필수요건	▶ 승선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상 「총톤수」, 「해기면증」 및 「승선기간」으로 경력기간 산정
주요직무	▶ LNG선박의 입·출항 및 하역관련 현장안전관리 ▶ 현장작업 안전관리 등 생산설비 운영 지원 ▶ 기타 LNG하역 및 항무관련 업무 등

6 영상촬영기사

자격/경력	▶ 공공기관, 언론사, 방송사, 기업체 등(개인스튜디오 제외)에서 영상촬영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¹⁾ 및 자격 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3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대내·외 공식 행사 영상촬영 및 편집 ▶ 영상물 기록 및 관리 ▶ 사내방송 영상촬영 및 편집 ▶ 유튜브 영상촬영 및 편집

1) 경력증명서(2024.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4.3.28.이후 발급분)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II 전형절차

※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단계	주요 내용	평가기준	비고
원서 접수	□ 기간 : 2024.05.20.(월) 10:00~2024.05.28.(화) 10:00 □ 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kogas.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명 가능서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유의사항 : 자격, 경력 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일)을 제외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등)은 블라인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최종제출 완료하여야 입사지원한 것으로 간주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자격, 경력 미인정	필기시험장 수도권, 대구 중 택1 ¹⁾
서류 전형	□ 평가내용 :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입사지원서 □ 합격자 발표 : 2024.06.26.(수)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필기장소, 시간 및 준비물 안내 등)	□ 지원자격(적부) □ 입사지원서(적부)²⁾	적격자 전원선발
필기 전형	□ 일자 : 2024.7.13.(토) 예정 □ 내용 : NCS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시 응시불가 ※ ㉮ 영상촬영기사 모집단위 필기전형 합격자는 본인 포트폴리오 자료(FHD, 16:9, 3분 영상)를 이메일(메일주소는 추후 안내, 500MB이하)로 제출 □ 합격자 발표 : 2024.07.22.(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면접장소,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 등)	□ 인성검사(적부) □ 인성검사 적합자 중 NCS직업기초능력 고득점순+ 가점 합산 고득점순	모집인원의 2~5배수선발 ·1명모집:5배수 ·2명모집:3배수 ·3명이상:2배수
면접 전형	□ 일자 : 2024.07.30.(화)~2024.08.01.(목) 中 하루 예정 □ 내용 : 직무면접 및 직업기초면접 ○ 필기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응시불가 □ 합격자 발표 : 2024.08.16.(금)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 안내 등)	□ 제출서류 확인(적부) □ 직무면접(50%) + 직업기초면접(50%) + 가점 합산 고득점순	모집인원의 1배수선발
임용	□ 임용일자 : 2024.09.12.(목) 이후 예정 □ 연수원 입소일 : 2024.08.26.(월) 예정 ○ 기초연수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 신원조사(적부) □ 연수 수료여부(적부)	조건부 임용 60점 미만 미수료 처리

1) 필기시험장소(수도권/대구)는 지원서 최종제출시간 기준 선착순 마감(단, 장소는 공사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

2)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중복 답변, 무의미한 단어 반복, 회사명 오기 등)는 불합격 처리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III 우대사항

※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력 요함 (미입력 시 우대불가)

모집분야	대상	우 대 내 용	비고
별정직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이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필수 제출	• 1개 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본인대상)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본인대상) 필수 제출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수급자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북한이탈 주민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필수 제출	
	다문화 가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재적등본, 결혼이민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필수 제출	
	경력단절 여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자립준비 청년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9.05.29. 이후)인 자로서,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필수 제출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중복해당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 사회형평적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부여
- 중병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5.13.)이후 발급분에 한함(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IV 근무지

모집단위	근무지
① SAP컨설팅트-재무회계	한국가스공사 본사
② 선박관리자	한국가스공사 본사
③ 심리상담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④ 보건관리자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
⑤ 하역안전관리자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
⑥ 영상촬영기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V 전형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필기전형 안내

- **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 적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 **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필기전형 과락기준 (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NCS직업기초능력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면접전형 안내

- **직무면접(100점, ㉠㉡㉢㉣㉤ 모집단위 대상)**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약20분~30분)동안 사전준비 후 직무에 대한 지식 평가
- **직무면접(100점, ㉥ 영상촬영기사 모집단위 대상)** : 본인 포트폴리오¹⁾ (FHD, 16:9, 3분 영상)에 대해 사전준비 후 발표 및 질의응답(15분/인)
- **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면접 4할미만 또는 직무면접 4할미만시
- 직업기초면접 + 직무면접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1) 본인 포트폴리오 자료(FHD, 16:9, 3분 영상)는 기한내에 이메일(메일주소는 추후 안내, 500MB 이하)로 제출 필요

기초연수 안내

- **연수태도 및 기초연수평가** : 연수원 입소시 사전 공지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미만시 미수료 처리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

구분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일정 및 집합장소 · 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안내 등	· 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 · 합격자 사진등록 및 정보입력 등
불합격자	· 적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

※ 전형별 지원자 경쟁률 현황은 알리오 공시를 참고

이의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
- 신청기한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00:00까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당일 요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한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운영**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일 전일까지 입사포기각서(첨부#5)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간 구제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
- (필기전형)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차기 채용 동일분야에 면접 전형기회 부여(1회 한)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합격 시키고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 처리

VII 유의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우리공사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발생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이후 적발 시 징계하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채용비리 발생 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바랍니다.

□ **본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단위, 일반직 신입, 일반직 경력, 연구직 모집공고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 시 업로드하는 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하여야 하며,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암호화 주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생월일을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내역 조회를 위하여 생년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 지원서 확인을 통해서 제출여부 및 지원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전에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 확인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 확인이 불가하며,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최종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관련 지원자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 시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 단, 2006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생월일 및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나, 생일이 명기되어있고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모집단위별 지원자 최소배수인원 미달 시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실시합니다.

VIII 기 타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첨부 #2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방문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스캔하여 recruit@kogas.or.kr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초임등급은 내규에 따라 해당 직급의 기준등급으로 하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2년 한도로 1년에 1등급을 가산합니다.
-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차기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별정직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콜센터(02-2025-2844, 2845), 오전9시 ~ 오후6시
 - * 채용홈페이지(<https://kogas.saramin.co.kr>) Q&A
- KOGAS는 창의형 글로벌 인재확보를 위해 2025년 이후 신규채용 시 기준어학성적을 상향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드립니다.

첨부#1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삭제 2021.11.16.>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첨부#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첨

첨부#3

경 력 증 명 서					
성명		생월일		연락처	HP : E-mail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모집단위별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히 기재 예) 법무업무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모집단위별 지원자격(경력) 확인불가 시 경력 불인정 ※ 발행기관의 직인 필수					

첨부#4

어학성적 기준

□ ‘선박관리자’ 어학성적 기준

외국어 (영어)	▶ 토익 750점 이상 수준의 유효 영어성적 보유자¹⁾ (2022.6.28.부터 응시하고 2024.5.28. 접수마감 이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의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유효 영어성적 점수표				
	토익	토픽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²⁾
	750점 이상	285점 이상	85점 이상	IM2 이상	IM2 이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가 토익 375점 이상, 토픽스 171점 이상				

1) 공사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어(영어) 능력 필요
 2) 토익스피킹 성적체계 개편(2022.06.04.)을 반영하여 토익스피킹 기준변경

첨부#5

입사포기 각서

- ☐ 성 명 :
- ☐ 생 월 일 :
- ☐ 지 원 분 야 :
- ☐ 수험 번 호 :

위 본인은 귀사의 2024년 별정직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통보받은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고자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며, 본 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유 :

2024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첨부#6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필기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인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선택형 시험]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선택형 시험]답안지 대필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각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기존4,5급 1호		
		·나쁜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2~6급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비고
지체 장애인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기존 1~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뇌경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기존 1~6급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기존 1~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존 2~6급
*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